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3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규정 준수 및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구성으로 개정

나.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안 제1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규정과 쉬운 말(순화용어)로 쓰기 규정 반영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중 “구청장”을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출석 하게”를 “출석하게”로 한다.

제9조 중 “세미나의”를 “세미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작성 보관”을 “작성·보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2조 중 “사항외에 위원회운영”을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 출석하게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 세미나 ----------.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작성・보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범위 안----------.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	제12조(운영세칙) ----------

한 사항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